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7인”을 “7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예산총괄담당관·시정개발담당관·시민과장”을 “예산담당관·조직제도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유사·중복 발간하는 앞에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을 삽입하고, 같은조제3호중 “및 홍보”는 이를 삭제하며, 같은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 결정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2항은 이를 삭제하며, 같은조제3항을 같은조제2항으로 한다.

①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제2항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출판관리계장”을 “출판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최초발간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제9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심의생략) ①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생략된 간행물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간사는 심의생략된 간행물을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디자인심의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자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이하 “디자인소위”라 한다)를 둔다.

②디자인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디자인소위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되고, 기타 디자인소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경우를 준용하여 디자인소위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영상물심의소위원회) ①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영상물의 기획·구성, 연출, 편집·녹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영상물심의소위원회(이하 “영상물소위”라 한다)를 둔다.

②영상물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 위원은 영상물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기타 영상물소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제14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2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디자인소위 및 영상물소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발행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2조의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시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제1항을 같은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은 각각 이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연도에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국·본부장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정여론조사의 주제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여론조사의 대외신뢰도 향상 및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정여론조사"라 함은 시의 각종 시책의 수립,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상의 여론조사 기법을 이용하여 일반시민 및 공무원 등의 의견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통상의 여론조사기법"이라 함은 공중의 의견을 파악함에 있어 정확성·과학성이 여론조사 전문가 등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본추출·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방법 등을 총칭한다.
3. "조사설계"라 함은 통상의 여론조사기법에 의한 표본의 추출, 조사방법, 설문내용, 분석방법 등 여론조사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계획을 말한다.
4. "주제"라 함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중심내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
2. 기타 위원장이 시정여론조사의 주제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안건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보관
 2. 조사방법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론조사 또는 도시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보관
 3.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의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제3조제1호에 의한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초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